

김지혜. 2018. “집으로 가는 길: 형제복지원 그 후.” 『인권연구』 1(2): 135-154.
Kim, Jihye. 2018. “Way home: A life after Hyungje Bokjiwon.” *Journal of Human Rights Studies* 1(2): 135-154.

[현장논단]

집으로 가는 길 : 형제복지원 그 후

김 지 혜*

인터뷰 참여: 한 종 선**

목 차

1. 기억
2. 해결
3. 부랑
4. 부역
5. 진실
6. 변화

1. 기억

20년 전, IMF 외환위기로 세상이 들썩이던 1998년 봄, 나는 인생 첫 직장에 들어갔다. 서울의 한 아동상담소에서 사회복지사이자 상담원으로 일을 시작했다. 대략 7세부터 18세까지의 아동¹⁾이 오던 빨간 벽돌 건물의 상담소 위층에는 남자 아동들의 숙소가 있었다. 짧게는

* 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

**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모임.

1) 이 글에서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18세까지 청소년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며칠부터 길게는 10여년을 거리에서 보내다 온 소위 ‘부랑아동’들이었다. 그 ‘시설’에서 80명 정도의 아동들이 먹고 자고 공부하고 운동하고 상담하며 살고 있었다.

내가 상담소에서 일하기 전에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삶이 거기에 있었다. 1년 동안 같은 양말을 신고 돌아다녀 발과 양말이 붙어버린 아동, 지하철에서 하도 구걸을 해서 지하철 노선을 몽땅 외워버린 아동, 6살 때 집에서 나와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온 모험기를 말하는 아동, 껌 한 통을 사서 껌팔이로 돈을 불리는 방법을 설명하던 아동, 검정 비닐을 가지고 본드 부는 법을 신나게 알려주던 아동 등, 그들은 사회의 ‘밑바닥’ 삶이 무엇인지를 너무 아무렇지 않게 들려주었다.

그 ‘부랑아동’을 만나기 위해 상담원들은 봉고차를 몰고 서울역 인근을 돌아 다녔다. 가끔은 경찰에게서 연락이 와서 데리러 가기도 했지만, 그냥 차를 몰고 돌아다니곤 했다. ‘픽업상담’이라는 우스갯소리였는지 공식명칭이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 용어로, 우리는 업무의 일부로 부랑아동을 픽업(pick up)하는 일을 했다. 나중에는 아웃리치(outreach)나 거리상담이라는 말을 쓰고 아동을 만나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조금씩 바뀌었지만, 그래도 내 기억으로 꽤 여러 번 우리는 아동을 ‘납치하다시피’ 봉고차에 태워 상담소로 데리고 왔다.

신참 사회복지사이던 나는 아동을 어떻게 다시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만들까 하는 생각으로 정신이 없었다. 일단은 상담소에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했다. 상담소에 적응해야 공부든 일이든 무엇이든 계획을 할 수가 있었다. 철창은 없었지만 사람의 감시가 끊임없었다. 다만 마음 한편에 불편함과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다. 아동을 강제로 데려와도 되는 걸까, 상담소에서 나가지 못하게 감시해도 되는 걸까, 차라리 거리에서 살겠다는 아동을 존중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억지로라도 ‘사회화’를 시켜야 하는 걸까.

2012년에 한중선 씨(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모임 대표, 제8회 진실의힘 인권상 수상자)의 기록을 담은 『살아남은 아이』(2012, 문주)가 발간되며 부산 형제복지원 이야기가 다시 세상에 나왔을 때, 나는 1980년대 부산의 거리를 돌아다니던 봉고차 사진을 보며 내가 사회복지사로 지낸 그 때를 떠올렸다. 형제복지원은 1987년 폐쇄되었지만 부랑아동을 잡는 봉고차는 여전히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 역사의 끝자락에 내가 있었다. 2000년, 내가 2년의 짧은 상담소 생활을 마치고 나왔을 때, ‘아동학대’를 처음으로 명문화하고 아동보호절차를 명시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상담소는 차츰 부랑아동 관련 일을 하지 않게 되었다.

그렇다고 그때 만난 그 아동들이 사라진 건 아니었다. 1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지하철 1호선에서, 나는 여전히 ‘찌라시(전단지)’를 돌리며 구걸을 하는, 이제는 20대가 된 청년을 만났다. 다들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한중선 씨 책 제목인 ‘살아남은 아이’는 나에게 형제복지원 이상의 의미였다. 내가 기억하는 그 세상을 살아남은 어떤 사람의 목소리가 나온 것이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로서, 아마도 나도 부역자였을 그 부랑의 역사를 상기하게 되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잔인한 국가폭력이 자행된 과거사이기도 하지만, 혹시 사회복지라는 이름 뒤에서 지금도 반복되는 인권침해의 연장선상에 있는 건 아닐까? 물론 그동안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사회는 ‘살아남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는 몰랐더라도 이제는 알아야 하는 역사를 조금은 따라가 보고 싶었다. 2018년 10월 16일 한중선 씨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형제복지원 그 이후의 삶에 대해 질문했다. 형제복지원이 폐쇄된 이후 그가 지나온 사회는 어떠했는지, 형제복지원 외의 사회 제도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는지 궁금했다(이하 모든 문단 인용은 한중선 씨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2. 해결

부산의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운영된 부랑인 수용 시설이었다. 3천명이 넘는 부랑인이 수용되어 살면서 군대식 규율에 따라 수용번호를 받고 소대장과 중대장의 명령에 복종해야 했다. 강제 노동, 구타, 성폭행 등이 일상적으로 있었고, 500명 이상 사망했다. 공식적으로 사회복지시설로 운영되던 이 기관은, 군사정권이라는 시대적 배경과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올림픽 등 대형 국제행사를 앞둔 거리정화사업과 맞물려 국가의 지원과 비호 아래 운영되었다(김명연, 2013). 형제복지원은 그 참상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1987년 폐쇄되기에 이른다.

한중선 씨는 9살이던 1984년부터 3년 6개월을 형제복지원에서 보낸 후 형제복지원이 폐쇄되면서 그곳에서 나왔다. 아버지와 작은누나도 형제복지원에 있었다. 2012년 발간된 『살아남은 아이』는 형제복지원 생활을 기록한 글과 그림이다. 피해를 입은 당사자로서 풀어낸 그의 생생한 증언은, 이미 끝난 일인 것 같던 형제복지원 사건을 다시 세상으로 끄집어내었다. 당시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의 이후 행적도 알려졌다. 그는 불법구금, 폭행, 살인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고 횡령죄만으로 2년 6개월을 복역하고 나왔다. 이후 법인 이름을 ‘사회복지법인 형제복지지원재단’으로 바꾸어 최근까지 사회복지사업가로 활동하여 왔다(여준민, 2013).

“사건은 해결되었다고 하지만, 사건 해결의 기준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1987년 형제복지원의 폐쇄가 사건의 해결이었을지 모르지만, 한중선 씨에게는 ‘해결’이 아니었다. 형제복지원을 나오던 날, 그는 120명의 다른 아동들과 함께 버스 3대에 나누어 ‘서울특

별시립소년의집(현 ‘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으로 보내졌다. 당시 서울소년의집(이하 “소년의집”)은 마리아수녀회가 서울시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던 아동복지시설로, ‘서울특별시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요보호아동의 수용보호 및 교육”과 “심신 장애 아동의 재활치료 및 재활교육”을 하는 곳이었다.

“내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야 사건이 해결되는 건데 나만 다른 고아원 가고, 아버지랑 누나는 정신이상인 걸린 상태로 사회에 돈 한 푼 없이 버려졌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이것은 사건 해결이 아닌 거라고. 내가 형제복지원에서 나왔을 뿐이지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언제나 집이었으니까.”

집으로 가기 위한 12살 한중선 씨의 여정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소년의집에서 자꾸 탈출하여 아버지와 누나를 찾으러 긴 터널을 걸었다. 버스를 타고 오며 지나친 터널을 지나면 부산이 나오는 줄 알았지만, 결국 잡혀서 돌아온 곳은 소년의집이었다. 형제복지원을 떠나는 버스를 탈 때, 아버지와 누나도 여기에 있다고 말했지만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다. 당시 부산시에서는 미성년자와 성인을 분리해서 전원조치 했고, 가족이 어디로 흩어져 가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 소년의집 수녀님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아버지랑 누나를 찾아라”며 한중선 씨를 설득했다.

소년의집에서 탈출과 귀소를 반복하다가 한중선 씨는 후에 서울시립갱생원(현 ‘은평의 마을’)으로 옮겨졌다. 갱생원 역시 당시 ‘서울특별시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마리아수녀회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던 부랑인보호시설로, “18세 이상 성인남자로 무의무탁한 부랑인, 불구자, 결인 등 수용보호”와 “수용자에 대한 교화 및 직업 보호”를 하던 곳이다.²⁾ 갱생원은 1961년 국내 첫 부랑인시설로 만들어져, 지금도 정원 1,000여 명의 노숙인요양시설로 운

영되는 대규모 시설이다. 한중선 씨는 16살에 갱생원에서 6개월 남짓 지내며 용접 자격증을 취득했고, 17살이 되던 해인 1992년 초에 사회로 나온다.

“형제복지원이라는 곳은 인권 자체가 없었던 곳이에요. 짐승의 권리라고 해야 하죠. 그거 밖에 없어요. 형제복지원과 다른 시설을 비교하자면, 형제복지원은 내 인생에서는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곳이고 그나마 다른 시설들은 너무 좋았다, 이런 느낌 밖에 없는 거죠. [탈]시설 운동하는 분들은 모든 시설을 다 똑같이 바라보는 입장은 이해하겠으나, 직접 겪어본 내 입장에서 너무 혹독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풀리다 보니까 편했다는 거죠.”

한중선 씨에게 소년의집이나 갱생원은 형제복지원과는 비교되지 않게 좋은 곳이었다. 일단 형제복지원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절대 못 빠져나가는 구조”였다. 반면 소년의집이나 갱생원은 “나갈 수 있는” 곳이었다. 그렇다고 강압이 완전히 없는 상태도 아니었다. 갱생원에서는 하고 싶지 않아도 빵 봉투나 쇼핑백을 접어야 했다. 할당량이 있었다. 그 일을 하면 주급 천 원이 적립되었으니 형제복지원보다는 나은 상황이었지만, 돈을 벌기 위해 자발적으로 하는 일은 아니었다.

“어떠한 노역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과, ‘이거 접어’ 해갖고 하는 것과는 다른 거죠. ... 시설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어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해야 되니까. ... 힘 없는 애들은 자기가 할당량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2) 2011년부터는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가 위탁을 받았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노숙인요양시설로 운영하고 있다.

고 힘 있는 사람들이 뺏어가 버리면 뺏겨야 되는 거라. 그런 게 폭력인거죠.”

갱생원에서 나와 공장 기숙사에서 지내며 4년 정도 일을 했다. 다 행히도 일은 끊이지 않았다. 1996년 당시 일하던 구두공장에서 쫓겨나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렇다고 돈을 제대로 받은 건 아니었다. 다른 사람이 월급으로 1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받던 일을 한중선 씨는 고작 30만원을 받았다. 그나마 5만원만 직접 받고 25만원은 사장 이름으로 적금을 부었다. 그러나 쫓겨날 때 사장한테 받은 돈은 결국 10만원 뿐이었다. 사장이 “아버지, 누나 찾을 때 찾아가라”고 해서 부은 적금이였다.

21살이 되던 그 때까지 한중선 씨는 아직 집에 가지 못했다. 그리고 그에게는 형제복지원도 사라지지 않았다. 구두공장 사장은 한중선 씨에게 “형제복지원에 돌려보낸다”고 겁을 주었고, 그 말에 한중선 씨는 공장을 나왔다. 이미 9년 전 폐쇄된 형제복지원으로 돌려 보내질까 봐 겁을 먹는 상황이라니, 얼핏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었다. 그런데, 그는 형제복지원이 없어진 줄 몰랐다. 그리고 1996년 그해 박인근 원장은, 공익사업을 명목으로 헐값에 매입했던 형제복지원의 터를 막대한 돈을 받고 아파트 부지로 매각했다.

“내 기억 속에는 형제복지원이, 건물이 없어진 걸 모르니까. ... 최소한 내가 왜 소년의집으로 왔는지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줬어야죠. 너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지금 그 형제복지원이 없어지는 과정에서 너는 다른 고아원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줬어야죠. ... 내가 형제복지원 건물 터가 완전 다 없어진 걸 알게 된 것도 아버지 누나 찾으면서 예요.”

3. 부랑

형제복지원이 존속했던 당시, 부랑인 강제수용정책의 근거는 1975년 내무부훈령 제410호 ‘부랑인의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조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지침’이었다(김명연, 2013; 김재완, 2015). 1987년을 기준으로 전국에 36개의 부랑인 및 부랑아 시설에서 16,125명이 수용되어 있었고, 대전의 성지원, 충남의 양지원, 충북의 광성복지원 등 다른 부랑인 시설에서도 폭행, 협박, 감금, 강제노역 등의 인권침해 사건이 있었다(이근동, 2015: 7-8). 국가는 부랑인을 “단속”의 대상으로 규정했고, 부랑인 수용시설은 1970년에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부랑인선도” 사업의 일환이었다.³⁾

사회복지사업법에 등장한 ‘선도’와 ‘복지’라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두 용어의 기묘한 만남은, 사회복지사업의 명목으로 ‘단속’과 ‘수용’을 정당화하는 관점의 왜곡을 오랫동안 눈치채지 못하게 만들었다. ‘선도’란 어떤 사람을 이미 ‘불량한 사람’, ‘반사회적인 사람’으로 규정한 전제 위에 이들을 변화시킨다는 의미의 언어다. 사회복지사업이 선도를 담당함으로써 범죄자에 대한 교정사업과 경계가 모호해졌다. 빈곤한 사람이 누리는 권리로서 사회보장이 아니라, 예비범죄자나 일탈자로 규정한 사람들에 대한 통제의 기제로서 사회복지사업이 이용되도록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었다.

대법원은 1988년 박인근 형제복지원 원장에 대한 판결에서 특수감금죄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원심판시의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적법한 사회복지

3) 1970년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2191호) 제2조 제4호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의 하나로 “사회복지상담·재해구호·부랑인선도·직업보도·노인휴양·린보(隣保)·무료숙박·리완치자(癩完治者)·사회복귀사업등 각종 복지사업 및 복지시설의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포함했다(밑줄은 저자 표시).

시설인 위 형제복지원에 위탁된 부랑인들”로서, “단지 취침중 도주하지 못하도록 철창시설이 되어 있는 출입문을 안에서 시정하여 이곳에 취침케 한 사실(기숙사의 창문도 철창시설이 되어있다) 등이 인정”되며, 이는 “피고인들이 수용중인 피해자들의 야간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는 행위라고 못볼바 아니어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1988).

그렇게, ‘부랑인’은 감금되어도 되는 불순한 인간을 지칭하는 용어였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일정한 주거 없이 돌아다니기 때문이었다. 내 무부훈령 제410호에서는 부랑인을 “일정한 주거가 없이 관광업소, 접객업소, 역, 버스정류소 등 많은 사람이 모이거나 통행하는 곳과 주택가를 배회하거나 좌정하여 구걸 또는 물품을 강매함으로써 통행인을 괴롭히는 걸인, 꺾팔이, 앵벌이 등 건전한 사회 및 도시질서를 저해하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또 “노변행상, 빈 지게꾼, 성인 꺾팔이 등 사회에 나쁜 영향을 주는 자”를 “부랑인에 준하여 단속하고 보호조치”했다. 부랑인이 아님을 입증하려면 “연고자가 확실한 자”임을 보여야 했다(김재완, 2015: 23).

“혐오 발언이에요, 부랑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 ‘부랑인’이라고 하면 약간 가져갈[빼앗을] 수 있는 사람, 부유하는 사람이니까, 말 그대로. ‘거지’는 한 지역에 그 지역만 돌아다니는, 어떻게 보면 구역이 있는 [사람인]데, 부랑인은 구역이 없는 사람이니까 위험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한중선 씨를 비롯해 형제복지원 생존자들은 이 ‘부랑인’이라는 기표와 싸웠다(이소영, 2014). 형제복지원 생존자인 최승우 씨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정말 부랑인이 아니었다”고 말했다(하금철, 2017). 하지만 형제복지원을 나왔을 때, 이들은 부랑인이 ‘되어’ 있었다. 한중선 씨의 경우 형제복지원과 그 폐쇄의 과정이 그를 ‘연고

자가 아무도 없는' 부랑인으로 만들었다. 그는 집으로 가야 '해결'이라고 믿고 소년의집을 뛰쳐나왔지만, 집으로 갈 수 없게 된 바로 그 상황 때문에 '고아'이자 '부랑아동'이 되었고 '선도'와 '수용'의 대상이 되었다.

“진상규명이라는 것은 처벌에 목적을 두고 할 수도 있겠으나,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모자란 사람이었냐, 그것도 봐야죠.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부랑아·인이었냐 이것도 봐야죠.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가난했었냐를 봐야죠. 그것도 진상[규명]을 해야죠.”

국가가 부랑인이라는 관념을 구성하고 실제로 그런 사람을 만들었으며 부랑인으로 살게 했다. '나는 부랑인이 아니었다'는 생존자의 외침은, 단순히 당시에 억울하게 끌려갔다는 호소로만 들리지 않는다. 국가가 설계하고 창조한 낙인에 인질 잡혀 살아온 삶에 대한 총체적 거부 의사로 읽힌다. 형제복지원 출신이라는 사실은 부랑인이라는 낙인으로 평생을 따라 다녔다. 가해자들을 향해 공분하던 사람들은 피해자들을 향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형제복지원이 폐쇄되었어도 이들의 삶에서 형제복지원은 계속되고 있었다.

“형제복지원에 잡혀갈 때도, '니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잡혀갔겠지.' 지금 나와서 진상규명을 해도, '니들이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 때 들어갔었던 거지'. 그리고 '니들이 보상 타 먹으라고 나왔던 거 아니냐?' 이런 색안경들이 있는 거야, 아직도. 이것이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야.”

그러니 진상규명이란 단지 '과거' 기억이 아닌 '현재' 삶의 변화를 위한 것이다. 한종선 씨는 형제복지원의 삶이 계속되는 지금의 삶을

“짐승의 삶”이라고 표현했다.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국회 앞에서 344일 켜(인터뷰 당시) 노숙농성을 하며, 이 운동의 목적을 “사람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했다. 부랑인은 ‘사람’이 아니었다. ‘거리정화사업’을 위해 ‘청소’되어야 할 대상이었다. 생존자들은 여전히 그 시선 속에서 ‘부랑인’으로 살고 있다. 생존자들이 싸우는 건 단지 그 시절 형제복지원의 가해자들만이 아니다.

“언제나, 그[걸] 주도했었던 국가 정책이든, 원장이든, 이 사람들보다 더 나빴던 것이, 말려줄 수 있는 국민들이 있었는데 말려주지 않고 방치했다는 거죠. 모르쇠 했다는 거죠, 방관자로서.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식으로, ‘니들 잡혀가도 돼’ 이런 식으로 했던 부분에서 사과를 아무도 안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힘든 거죠.”

4. 부역

한중선 씨는 32살이 되던 2007년에 드디어 아버지와 작은누나를 찾는다. 허리를 다쳐 더 이상 ‘노가다’(막일)를 할 수 없게 된 한중선 씨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하러 갔을 때였다. 수급자 신청을 받는 구청 담당자는 한중선 씨에게, 그가 아버지와 작은누나의 ‘부양의무자’⁴⁾라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 그렇게 아버지와 작은누나가 정신병원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국가가 자신을 부양의무자라고 부르며 “아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부양의무자”를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2014년 개정법부터는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제외)로 정의하고(제2조 제5호), 수급자격을 산정할 때 소득기준 외에도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여 왔다.

버지, 누나[에 대한] 책임을 나한테 떠넘기”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가 돈을 벌면 아버지랑 누나는 수급자 지위에서 탈락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일을 하지 말란 소리였다. 일을 하지 않기로 하고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 부양의무자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랑 누나가 처음부터 정신이상자가 아니었거든. 이렇게 만든 책임은 형제복지원이었고, 그 당시에 사회정화사업이라는 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왜 그거에 대한 부양의무를 나한테 지나, 이러면서 따지기 시작한 거죠.

20년 동안 가족을 찾으러 다닐 때는 어디서도 도와주지 않더니, 이제 와서 국가는 정신병원에 있는 가족을 돌보아야 한다는 ‘의무’를 고지하며 쉽게 가족이 있는 곳을 알려 주었다. 국가의 사회복지제도는 그렇게 또 한 번 한중선 씨를 배신했다. 처음에는 감금, 폭력, 강제노동으로 고통을 주고, 다음에는 가족을 떼어 놓고서 부랑아라는 낙인을 찍더니, 이제 그로인해 가난하게 살아온 자신에게 그 국가 때문에 정신장애가 생긴 가족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하더니. “이 씨를 놈의 이걸 어떻게 알리냐”고, 한중선 씨는 2012년 처음으로 국회 앞에서 형제복지원 사건을 알리는 1인 시위를 시작하기까지 오랫동안 생각했다.

형제복지원은 종종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비견된다. 그렇다면 우리 안의 학살자와 부역자는 어떤 모습일까? 한나 아렌트는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을 기록한 책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그의 동기는 “개인적 성취를 위한 과도한 부지런함” 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승진을 위해 주어진 일을 했다는 변명 뒤에 “아무 생각이 없었음” 그 자체가 그를 희대의 범죄자로 만들었다고 분석했다(Arendt, 1964). ‘악의 평범성(banality of evil)’이라는 유명한 표현으로, 아렌트는 흔히 괴물로 생각하는 악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음을 상기시켰다.

그 평범함이, 누구라도 그랬을 것이라는 자기변명이 아니라, 생각과 양심이 있는 인간으로 행동하지 못했다는 책임에 대한 반성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지금 사회복지학의 대부들, 교수들, 있는 사람들, 형제복지원 모른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형제복지원만 몰랐을 뿐이지 전국의 36개 부랑인 수용소에 자기들은 한번쯤 다 가봤던 사람들이에요. 그거 눈감았던 사람들이에요. 방관자들에게요. 내가 봤을 때 부역자들에게요.”

통상 사회복지사는 ‘좋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여겨진다. 나도 그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런데 한종선 씨는 사회복지관계자들이 부랑인 수용의 역사 속에서 방관자거나 부역자라고 본다고 말한다. 사실은, 사회복지사에 대한 ‘좋다’는 평가의 이면에,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좋지 않다’고 보는 평가가 전제되어 있다고 꼬집는다. 사회의 눈으로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은) ‘문제 있고 위험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하고 싶지 않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로 평가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좋은’ 사회복지사, ‘좋은’ 사회복지사업은 애초에 낙인과 배제를 전제로 한다는 말인가?

“일반인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시설은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험한 사람을 가두는 곳. ... 먹고 살기 힘들니까 ‘먹고 살기 힘들다 보면 위험한 짓을 할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이 깔려있는 거예요. 그러다보니 ‘너는 시설에 가라’ 이런 시각들이 있는 거고. 그러면서 ‘시설은 좋은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좋게 보는 거죠. 힘든 일 하시는 분, 좋은 분들 이렇게 보죠.”

한중선 씨는 “시설이 너무 방대해졌고, 그래서 탈시설은 맞다”고 말한다. 하지만 시설이 “진짜 필요한 상황이 있다”고도 말한다. 다만 “그건 극소수가 사용하는 것”이라고 한다. 중요한 건 누구의 필요성, 누구의 선택이냐는 것이다. 시설은, 함께 살기 불편한 사람을 ‘버리는’ 곳이어서는 안 된다. 예산을 뽑아내기 위해 사람을 ‘채우는’ 곳이어서도 안 된다. 지금까지 시설의 운영방식은 “관리자를 위한 방식”이었다. 그가 말하는 ‘최소한의 필요한 시설’은 시설 이용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사람이 시설에 맞추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이 사람에게 맞추어야 한다.

그리고 탈시설을 위해서는 탈시설 이후의 생활이 “확실하게 보완”되어 있어야 한다. 인권침해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서둘러 시설을 폐쇄하는 것은 ‘해결’이 아니다. 한중선 씨의 지난 삶이 그러했듯, 시설이 폐쇄된다고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삶이 끝나지 않는다. 사회적으로 볼 때 시설의 폐쇄는 문제의 종결이 아니라 새로운 과제와 시작이고, 반성과 성찰을 통한 변화의 계기여야 한다.

5. 진실

“자세히 보라, 이게 어떻게 수영장이나, 열아홉 스물 먹은 사람이 팬티도 안 입고 수영하는 게 있냐, 하면 그제서야 진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국회 앞, 스티로폼으로 작은 움막을 만든 농성장 앞에서, 한중선 씨는 형제복지원 당시의 사진을 보며 설명했다. 대중목욕탕 크기 정도의 수영장 안에 줄지어 빼곡히 가득 찬 사람들이 웃고 있는 사진을 가리키며, 형제복지원이 우수한 시설이라고 홍보하려고 만든 영상의 한 장면이라고 했다. 한중선 씨는 이 장면이 사실 수영하는 모습이 아니라

고 했다. 얼핏 그렇게 보이는 것뿐, 사진 속 사람들은 홍보사진을 찍는 데 동원되었을 뿐이었다. 왼편 구석에는 방망이를 들고 서 있는 사람도 찍혀 있었다. 물이 귀했던 그 때, 맞지 않고 물속에 있는 그 순간이 즐거웠던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홍보를 통해 전시하는 형제복지원 생활의 즐거움을 보여주는 건 아니었다. 같은 장면을 보아도 피해자의 증언을 통해 ‘진실’이 보이게 된다고 그는 말하고 있었다.

1987년 박인근 구속과 형제복지원 폐쇄조치로 거의 끝난 것처럼 보였던 형제복지원 사건은 2012년 5월 피해생존자 한중선 씨의 국회 앞 농성을 계기로 다시 세상에 나왔다. 그의 이야기는 전규찬 교수와의 만남을 계기로 『살아남은 아이』로 기록되고, 이어 다른 피해생존자 11명의 이야기가 『숫자가 된 사람들: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구술기록집』(오월의 봄, 2015)을 통해 알려졌다.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김용원 변호사와 시민단체 및 법학계가 참여한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 규명 및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가 2013년 3월에 열리고, 형제복지원 사건에 관한 심층언론보도, 피해생존자의 증언을 포함한 여러 차례의 토론회, 학계의 논문들이 이어졌다.

한중선 씨를 비롯한 피해생존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실에 다가가기 위한 운동에 동참하고 지지하고 있다. 진선미 의원 등 73인은 2016년 7월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법률안’(이하 “형제복지원 특별법”)을 발의했다.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을 도모”하려는 목적이다. 2017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장은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2018년 10월에는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박인근 원장에 대한 수사의 축소사실을 확인하고 국가의 사과와 진상 규명 및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권고했다. 이어 11월 20일 문무일 검찰총장은 29년 전 형제복지원 판결의 재심리를 요구하는 비상상고를 대법원에 신청했다. 며칠 후 27일, 문 검찰총장이 피해생존자들을 만나 사과했다. “과거 정부가 법률에 근거 없이 내무부 훈령을 만들고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 국민을 형제복지원 수용시설에 감금했다.”며, 검찰이 외압에 굴복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음에 “마음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같은 해 9월 16일 오거돈 부산시장은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부산시의 책임을 인정하며 공식 사과하였고, 12월 26일 부산시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신고센터 ‘뚜벅뚜벅’을 열었다. 진실을 향해 한발 한발 나아간다는 의미의 이름이다.

“언제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부인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잡혀갔는지에 대해서 인식이 되지 않으면 니들이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왜 잡혀갔는지, 국가정책사업으로 인해서 잡혀갔다면 그걸 명시를 해야죠. 그래야지만 최소한 우리는 ‘우리도 사람이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인터뷰를 하는 동안 한종선 씨는 진상규명의 목적이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했다. 그가 처음으로 손 글씨로 만들었던 시위 팻말에도, “피해자들을 동물 짐승처럼 만들었으면 다시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라고 적었더라다. 그에게 사람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이 질문에 그는 나에게 되물었다.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면 내가 불쌍하다고 바라봐 주는 게 좋겠어요, 어떻겠어요?” “불쌍하게 바라보는 거는 자존심 상하죠” 나의 대답에 이어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그렇죠. 그런 개념이에요. 피해자로 남게끔 만드는 이 사회

구조가, 불쌍하게 바라봐주고 동정으로 다가와주고 사건, 일은 제대로 해결해주지 않으면서 위로만 해주는 거예요. ... 그것이 과연 같이 동등한 사회에서 상생하는 길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거죠. 피해자라면 피해자라는 건 인정하되 이들이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게끔 같이 가줘야 되는 거죠.”

6. 변화

어쩌면 20년 전 신참 사회복지사로서 내가 가졌던 고민은 잘못된 질문에서 출발한 것이었는지 모른다. 부랑아동을 강제로 시설에 있게 하느냐 아니냐의 질문에 앞서, 인간의 근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결정을 내가 혹은 기관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오만함에 질문을 던졌어야 했다. 물론 상담의 과정을 통해 집으로 잘 돌아간 아동도 있고, 나름 자립하게 된 아동도 있었으며, 나보다 훨씬 오래 일해 온 다른 사회복지사들과 긴 인연을 맺는 아동도 있었으니, 그 모든 활동을 무가치한 것으로 돌리고 싶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내가, 국가가 만든 부랑인이라는 기표를 받아들이고 집행하는 시스템의 일부였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다.

내무부훈령 제410호는 1987년 2월 폐지되었다. 이후 변화가 있었지만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 1987년 보건사회부 훈령으로 ‘부랑인선도시설 운영규정’이 제정되었다. 2000년 보건복지부령으로 ‘부랑인복지시설설치·운영규칙’이 제정되고 여기서 부랑인은 “일정한 주거와 생업수단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를 배회하거나 구걸하는 자”로 정의되었다. 사회복지사업법상의 “부랑인선도”라는 용어는 1992년 개정법에서 “부랑인보호”로 바뀔 때까지 사용되었고, 2005년 개정을 거치며 부랑인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노숙인’이 등장하고 2011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부랑인이라는 단어는 사회복지

지사업법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보호’와 ‘복지’와 함께 “선도(善導)”는 여전히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현행법까지 이어지고 있다.⁵⁾

‘부랑인’이란 단어가 법적으로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다. 결핵예방법, 노인복지법, 법인세법 시행령 등 법령과 50개 이상 자치법규에 아직까지 부랑인이라는 용어가 남아있다.⁶⁾ 대구희망원의 설치근거인 ‘대구광역시시립 희망원 설치 조례’의 목적은 “부랑인을 보호하고 자립·자활 능력을 배양”하는 것으로서(제1조), 이미 폐기된 ‘부랑인복지시설설치·운영규칙’에 따라 부랑인을 보호하도록 규정한다(제4조).⁷⁾ ‘창원시립 복지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부랑인을 단속 수용 보호”하는 것을 설치목적으로 명시하고(제1조), “부랑인, 결인, 노숙자 등 구호 대상자의 단속, 수용, 선도, 직업보도”를 업무로 정하며(제3조 제1호), 부양할 연고자가 있다고 인정될 때 등의 경우에 퇴원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5조).⁸⁾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인권침해도 끝나지 않았다. ‘2016년판 형제복지원’으로 알려진 대구희망원은 1958년에 설립되어 1980년부터 대구천

5)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는 “사회복지사업”에 대해 관련 개별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정의한다(밑줄은 저자 표시).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18. 12. 27.자로 검색한 결과이다.

7) 대구광역시시립희망원설치조례(2018. 8. 10. 대구광역시조례 제5137호로 개정된 것).

8) 창원시립 복지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7. 11. 15. 경상남도창원시조례 제1033호로 개정된 것) 제5조에 따르면, 1. 부양할 연고자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자립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동능력이 회복되었을 때, 3. 직업이 알선되었을 때, 4. 공동생활에 불안을 끼칠 감염병 또는 질병으로 장기 치료를 요할 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퇴원을 명할 수 있다.

주교회유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던 1,000명이 넘는 대규모의 노숙인·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이었다.⁹⁾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사회복지시설평가에서 6회 연속 우수시설로 선정되고 보건복지부장관상과 대통령상을 받았다(박유리, 2016). 감금, 상습적인 폭언·폭행 및 학대, 급식비 횡령 및 거주인의 금품 편취, 부당한 작업강요, 거주인 사망자의 부당처리 등의 인권침해가 세상에 알려진 건 2016년이였다(안영춘, 2016).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인권침해는 여전히 한해에도 여러 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다.

사회복지는 당연히 필요하다. 기본적인 의식주를 비롯해 사회보장의 권리는 헌법과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권리이며 국가의 의무다. 하지만 동료 시민에 대한 존중과 인간의 권리에서 출발하지 않는 ‘사회복지’는 무엇보다 처참하게 인간의 삶을 짓밟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한중선 씨는 말하고 있었다. 사회복지사는 ‘좋은’ 사람일 필요가 없다. 누군가를 ‘좋지 않은’ 사람으로 명명하고 올라서 얻는 명예는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롯해 사회복지사업이라는 미명아래 이루어진 인권침해의 진실이 규명되고 아프게 반성되어야 한다. 사회복지가 낙인과 배제를 은폐하는 기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실현하는 이념이자 제도가 되도록 하려면 말이다.

2018년 12월 27일 오늘도, 한중선 씨는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여의도 국회 앞에서 416일째 천막 농성 중이다. 집으로 가는 그의 긴 여정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⁹⁾ 대구희망원은 2017년부터 사회복지법인 전석복지재단이 위탁받았고, 희망원(노숙인재활시설), 보석마을(노숙인요양시설), 아름마을(정신요양시설), 시민마을(장애인거주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참고문헌

- 김명연. 2013. “형제복지원사건과 국가책임.”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규명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85-108.
- 김재완. 2015. “형제복지원 인권침해불법행위 사건의 책임, 기억 그리고 미래.” 『민주법학』 57: 13-53.
-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1580.
- 박유리. 2016. “폭행, 갈취, 강제노동... 2016년판 형제복지원인가.” <한겨레> (8월 26일).
- 안영춘. 2016. “인권위, 대구시립희망원 가해자 검찰 고발” <한겨레> (11월 28일).
- 여준민. 2013.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 월간 복지 동향 75: 48-52.
- 이근동. 2013.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관하여.” 내무부 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등 피해 사건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안전행정위원회), 1-8.
- 이소영. 2014. “법이 부착한 ‘부랑인’ 기표와 그 효과: 형제복지원 기억의 재현과 과거청산 논의의 예에서.” 『법철학연구』 17(2): 243-274.
- 전규찬·박래균·한종선. 2012. 『살아남은 아이』. 문주.
- 하금철. 2017. “형제복지원 만의 문제 아냐, 전국 36개 부랑인 시설 전수조사해야” <비마이너> (12월 27일).
- 형제복지원구술프로젝트. 2016. 『숫자가 된 사람들: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구술기록집』. 오월의봄.
- Arendt, Hannah. 1964. *Eichmann in Jerusalem: A Report on the Banality of Evil*. NY: The Viking Press.